

[공동주택]		
(17)1구의 전용면적이 100㎡ 이상116㎡이하	5/100	○ 공용면적 ○ 복층형 공동주택의 경우 29㎡에 대하여는 적용대상 가산율의 50%적용(예 : 가산율 40/100→20/100)
(18)1구의 전용면적이 116㎡ 초과132㎡이하	10/100	
(19)1구의 전용면적이 132㎡ 초과149㎡이하	15/100	
(20)1구의 전용면적이 149㎡ 초과165㎡이하	20/100	
(21)1구의 전용면적이 165㎡ 초과182㎡이하	25/100	
(22)1구의 전용면적이 182㎡ 초과198㎡이하	30/100	
(23)1구의 전용면적이 198㎡ 초과215㎡이하	35/100	
(24)1구의 전용면적이 215㎡ 초과231㎡이하	40/100	
(25)1구의 전용면적이 231㎡ 초과238㎡이하	45/100	
(26)1구의 전용면적이 238㎡ 초과245㎡이하	50/100	
(27)1구의 전용면적이 245㎡ 초과	70/100	

② 자동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의 가산율 조정

소형엘리베이터중 가정용에 한해 가산율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소형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 상가 등의 건물에 대하여도 가산율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바람직함으로 이를 보완 한 것이다.

현 행		조 정	
가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자동승강기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오토워커 단, 차량운반 승강기와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가정용 승강기는 제외)	15/100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자동승강기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오토워커 단, 차량운반 승강기와 적재하중 200kg 이하의 소형 승강기는 제외)	15/100

③ 호화 내·외장재 사용건물 가산율 적용 폐지

특수유리로 외벽을 치장한 건물은 벽을 대신하여 유리로 외벽을 치장한 건물로서 유리로 외벽을 대신하여 건축할 경우 건축비가 일반외벽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비하여 더